

# 시민단체 공동 성명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문 의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 국장(02-3673-2143)

제 목 :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날 짜 : 2020. 12. 21(월) / 총4쪽

##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

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영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펴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4. 기업의 범죄에 '위법행위 시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준법감시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이를 '선한 법인 (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위법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기업 범죄의 양형 요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에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유용성 보다는 역설적으로 '왜 이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사용하면 안되는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첫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평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절

대 양보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한겨레 신문, <http://bit.ly/3qYQIG1>). 이번 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lt;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gt; &lt;제1/83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 이후 보고서 제출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조사에 한계가 있었음</li> <li>· 면담조사는 준법감시위원회와 7개 관계사 중 대표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3개 회사에 대해서만 실시했음</li> </ul> </li> </ul>
<p>&lt;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점검일정의 한계’ 부분&gt; &lt;제48/83쪽&gt;</p> <p>그러나, 10일에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 첫 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점검항목 준비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자료검토, 심지어 요청자료 목록을 만들기 전에 현장점검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음.</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현장점검도 3개 관계사와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하여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10시간 이내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음</p>

둘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 등의 측면에서 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고무줄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lt;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절차적 정당성’ 부분&gt; &lt;제47/83쪽&gt;</p> <p><b>2. 절차적 정당성</b></p> <p>점검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점검목적에 따라 개별 점검항목 도출하고, 개별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에 대한 종합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임. 점검항목을 합의하여 준비했으면, 그 점검결과에 따라야 함. 점검결과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점검항목을 바꿀 수는 없으며, 개별 점검결과와 배치되는 종합결론을 도출해서도 안 됨.</p> <p>결론을 불합격으로 정해놓고, 잘 되어 있으니 문제를 어려운 것으로 바꾸거나, 결론을 합격으로 정해놓고, 미흡하게 되어 있으니 문제를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사후에 문제를 바꾸는 것은, 사후에 점검항목을 바꾸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임</p>
--

셋째, 당초 합의했던 바에 따른 합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평가가 제멋대로 평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lt;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gt; &lt;제10/83쪽&gt;</p> <p><b>나. 점검결과</b></p> <p>■ 첨부 전문심리위원별 의견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심리위원단이 점검결과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지만, 평가 부분에 대한 표현에 의견 차이가 있어 각자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li> </ul>
<p>&lt;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추가 의견' 부분&gt; &lt;제45/83쪽&gt;</p> <p><b>IV. 추가의견</b></p> <p>I. 점검항목 선정부터 II. 점검항목 및 점검결과, III. 점검결론은 전문심리위원 사이에 합의된 종합결론이 도출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음. 그러나, 점검심리위원 보고서 제출 당일까지 전문심리위원들이 종합결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이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음.</p>

이번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평가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했고, 그 결과 제멋대로 중구난방식 평가의견을 담은 수박에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6. 앞에서 조목조목 살펴보았듯이 이번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문제점 투성이의 졸속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고서가 졸속으로 마련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준영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불 수박에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집행유예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